

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3조(구성) ① - ③ (생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, 환경,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<u>위촉위원은 지역주민, 환경·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, 기업체·시민사회단체·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<u>위촉위원은 지역주민, 구의원, 환경·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</u>..... </p>

※ 여타부분은 제정안과 같음